

말레이시아 외국인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박 원 석

<목 차>

- I. 머리말
- II. 투자현황
- III. 외국인 투자법제의 주요내용
 - 1.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 2. 외국인투자 주무기관
 - 3. 투자우대제도(Incentives for Investment)
 - 4. 산업재산권 보호
 - 5. 외환관리와 외화교환제도
 - 6. 조세제도
 - 7. 투자장벽
- IV. 맺음말

I. 머리말

국토면적 약 33만km², 인구 25백만, 국내총생산 20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per capita income) 14,954링기트(3,935달러(2004))인 말레이시아는 천연고무와 주석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1966년부터 몇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고,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공적인 유치를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 가는 경제규모를 달성하였다.

2 比較法學 (第16輯)

말레이시아의 GDP 기준으로 보았을 때 1960년대 5.1%, 1970년대 7.8%, 1980년대(1985-86) 5.9%, 1990년대 8.7%로 성장하였고, 아시아 전역을 강타한 재정위기 때에도 다른 아시안 국가들과는 달리 1998에 7.4%, 그리고 1999-2000년에 7.2%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최근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4.2%와 5.2%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이러한 아세안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성공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유는 외환거래 및 과실 송금의 자유, 각종 행정규제 철폐, 절차 간소화는 물론 투자관련 정치적 요소들을 분명히 함으로써 투자자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등 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이의 결과로, 40여개 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3,000개 이상의 제조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으며, 2004년 기준으로 5,000개사 이상의 외국인 투자업체가 진출해 있다. 예를 들어, 피낭이나 켈라룸푸르의 근교 공업센터에는 각종 공업시설이 진출하여 전기기계, 수송기계 등이 수출되고 있다.

무역은 1976년 석유수출의 급증 이후 큰 폭으로 수출 초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출품은 석유, 목재, 기계류, 팜유, 고무, 주석의 6대 상품이 전체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며, 수입품은 기계류, 석유제품, 철강, 자동차 등이다. 주요 무역상대국은 일본, 싱가포르, 미국 등이다. 우리나라와는 2001년 대한 수입액 26억 2800만 달러, 대한 수출액은 41억 26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¹⁾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투자 기본정책은 1960년대까지 무분별하게 시행된 외자도입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지역간, 인종간 빈부격차가 심화되자 1970년대부터는 선별적 외자도입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1) 우리나라와는 1960년 2월 수교하여 상호 상주공관을 설치하였으며, 1962년 12월 무역협정, 1965년 12월 문화협정, 1974년 4월 항공협정을 체결하였다. 야후 백과사전, [www.yahoo.com].

1980년대 중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986년 투자진흥법을 제정하여 적극적인 외자도입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외자도입정책으로 인한 고도성장의 후유증으로 인력난, 물가상승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자 1991년 11월 외국인투자정책의 개정안을 채택하여 세계상의 우대조치를 자본, 기술집약적인 투자 외에는 대폭 축소하고, 외국인투자 비율규제를 다소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먼저, 말레이시아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황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투자 법제 중 투자우대제도, 산업재산권 보호, 조세제도, 노동여건, 외국인투자 규제 등을 살펴본다.

II. 투자현황

말레이시아 경제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여도는 절대적인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1986년 투자진흥법은 외국인 100% 출자를 인정하는 규제완화조치를 실시하여 외국인투자가 급증하여, 1992년 이전까지는 제조업에 대한 국내 총투자에서 외국인투자의 비중이 내국인 투자 비율보다도 더 컸다. 그러나 1991-3년간 선진국의 투자부진과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 및 지가상승, 노동력 부족 등으로 외국인투자 규모가 62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이 기간 동안 선진국의 투자비중이 감소한 이유는 1991년 외국인 투자정책을 개정하여, 우선산업지원 또는 저개발지역 중심의 선별적인 외국인투자 유인정책을 취하면서, 기술집약적 및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만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4년 이후에는 선진국의 경기회복, 엔고로 인한 일본기업의 투자확대 등으로 외국인 투자실적이 4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가, 1995년 신흥공업국에 대한 해외투자분산화 및 소규모 위주의 투자실행으로 다

4 比較法學 (第16輯)

소 둔화된 37억 달러를 유치하는데 그쳤다.

말레이시아에 대한 주요 투자국은 일본, 대만, 미국, 싱가포르로 1993년 이후 이들 4개국의 투자규모가 전체 외국인투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1980년 중반 이후 일본기업들이 말레이시아로 생산라인을 이전하거나 첨단 생산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주요 투자업종은 전기/전자, 섬유, 화학 등이다. 1996년 외국인투자 승인액은 171억 링기트(약 68억 달러)로 전기/전자(54.2%), 화학(12.3%), 인쇄(9.2%), 비금속광물(3.8%), 정유/석유제품(3.7%) 업종순으로 투자가 이루어 졌다.²⁾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근간을 둔 수출지향 산업화, 민간부문과 정부간 긴밀한 협력체제, 물가안정 및 높은 저축률을 동반한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등으로 미래의 동남아시아 경제개발 모델로 부각하고 있다.

Ⅲ. 외국인 투자법제의 주요내용³⁾

1.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외국인투자 기본법으로 투자진흥법(Promotion of Investment Act of 1986)과 산업조정법(Industrial Coordination Act of 1975)이 있다. 투자진흥법은 1990년 신경제정책이 발표되면서 대폭 개정되었으며 우대산업분야와 우대개발지역을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투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투자우대조치를 부여함으로써 특정 산업 및 지역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말레이시아 산업개발청(Ministry of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자료, [http:www.mida.gov.my].

3) 말레이시아 산업개발청(MIDA) 홈페이지-투자가이드 [www.mida.gov.my].

산업조정법은 제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이는 전체 제조업을 대상으로 사업활동의 인가, 감독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특정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발생하는 과열경쟁, 과잉생산 등을 방지하여 질서 있는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산업조정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본금 250만 링기트 또는 종업원 75명 이상의 제조업체 및 모든 기술이전 관련사업은 산업개발청(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MIDA)에 투자신청을 한 후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의 사업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⁴⁾ 그러나 생산제품의 다양화 및 생산 확장을 위한 증자시, 기존의 수출지향 투자기업이 당해 생산제품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제통상산업부나 산업개발청의 별도 승인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또한,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증자시 지분투자액이 250만 링기트 이하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승인 절차는 적용되지 아니 하나, 증자에 관한 세부 투자계획을 MITI나 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인투자 주무기관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투자는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와 그 산하기관인 산업개발청(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MIDA)의 주관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MITI는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정부기관으로서 외국인기업의 신규 투자 및 증자, 우대조치 수혜 및 기술이전과 관련된 외국인투자 수행시 동사업을 인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MIDA는 1965년 연방산업개발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1967!

4) Id., at Getting Started.

년에 업무를 개시하였고, 외국인투자의 정보제공 및 자문, 투자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회사설립 및 등록 등 외국인투자에 관한 총체적인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위 두 기관 외에 수상, 재무부, 중앙은행, MITI, MIDA 및 관련 정부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Committee: FIC)가 있는데, FIC는 회사의 소유권 이전 및 사업 통제, 외국인의 고정자산 및 말레이시아기업 의결권 취득, 합작투자 및 기술이전 등에 의한 기업인수 및 합병거래를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3. 투자우대제도(Incentives for Investment)

1) 제조업분야에 대한 우대제도(Incentives for Manufacturing Company)

말레이시아는 산업분야에 따라 광범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제조업과 농업, 관광산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우대를 부여하고 있다.⁵⁾

제조업에 제공되는 주요 장려정책은 MITI가 정한 '권장활동' 또는 '권장제품'의 우선순위에 따라 개척자자격(Pioneer Status: PS), 투자세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ITA) 및 재투자공제(Reinvestment Allowance: RA) 대상기업으로 분류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데, 그 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levels of value-added), 사용기술 및 산업간 연계정도(technology used and industrial linkages) 등을 사용한다. 위의 자격을 취득한 프로젝트를 '권장활동' 또는 '권장제품'이라고 부르고 있다.

개척자지위(PS)로 지정된 회사⁶⁾는 1991년 11월부터 MITI가 인정한

5) 해당 법령으로서 1986 투자진흥법, 1967 소득세법, 1967 관세법, 1972 판매세법 그리고 1976 소비세법이 적용된다.

생산일로부터 5년간 법정소득액⁷⁾의 3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MITI가 인정한 생산일은 생산수준이 생산능력의 30%에 달한 날이다. 또한 사바주(Sabah)/사라왁주(Sarawak)와 말레이시아 반도의 '동쪽화랑'⁸⁾에 위치한 회사가 2003년 9월 13일 이후에 위 프로젝트를 신청하면 5년간의 세금감면기간 동안 법인소득에 대해 100% 면세된다. 이러한 추가 감면혜택은 2005년 12월 31일 까지 접수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투자세액공제(ITA)는 개척자지위(PS)의 대안으로서 대상기업은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지출(승인된 프로젝트에 사용된 공장, 기계, 설비 및 기타 장비에 대한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6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제액은 과세연도 법정 소득의 70%까지 소득세와 상계되고, 미사용 공제액은 모두 사용할 때까지 차기 년도로 이월이 가능하며, 상계 후 잔존액인 30%는 현행 법인세율로 과세된다.⁹⁾

재투자공제(RA)는 최소 12개월 동안 사업을 운영한 기업으로서, 생산능력의 확충, 생산설비의 현대화와 개량, 제품의 다양화와 생산설비 자동화를 위해 공제가능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위 자!

-
- 6) 개척자지위는 산업연관효과가 큰 자본/기술집약적인 투자사업과, 생산활동을 촉진시키는 제조업, 농업, 호텔, 관광업 등에 수시로 부여되고 있고, 자본금이 50만 링기트 이하이고 말레이시아 내국인 지분이 최소한 70% 이상인 중소기업은 대체로 개척지지위 대상기업에 해당된다.
 - 7) 법정소득액은 총 소득액에서 수익적 지출(revenue expenditure)과 법정상가(capital allowances)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8) 켈란타 주(Kelantan), 테렝가누 주(Terengganu), 파항 주(Pahang), 제란투트 주(Jerantut) 그리고 조호르 주(Johor)의 머싱(Mersing) 지역이 해당된다.
 - 9) 사바주(Sabah)/사라왁주(Sarawak)와 말레이시아 반도의 '동쪽화랑'에 위치한 ITA 대상기업은 개척자지위와 마찬가지로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프로젝트는 2003년 9월 13일 이후에 신청된 프로젝트에 한한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소득세와 상계될 수 있는 특혜를 가진다. 이러한 추가 감면혜택은 2005년 12월 31일 까지 접수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본지출의 60%를 공제한다.¹⁰⁾ 공제액은 과세연도 법인소득액의 70%까지 소득세와 상계가능하고, 미사용 공제액은 모두 사용할 때까지 차기연도로 이월이 가능하다.¹¹⁾ 개척자지위와 투자세액공제 신청은 산업개발청에 하는데 반해, 재투자공제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nland Revenue Board, 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업 분야에 대한 위 장려혜택 외에도 가속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ACA)와 수출인센티브제도가 있다. 가속자본공제는 재투자액 공제기간 15년이 경과한 후에 권장제품 생산에 재투자한 회사에 적용되는데, 대상 기업은 3년간에 걸쳐 재투자 당해 연도에 40%의 초기 공제를 받고 후속연도에는 연간 2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출인센티브제도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반 제조업에 대한 인센티브 이외에도 수출신용재금융(Export Credit Refinancing), 수출신용 보험료의 이중공제, 수출진흥을 위한 이중공제, 산업용 건물공제(Industrial Building Allowance: IBA)가 있다. 수출진흥을 위한 이중공제는 수출품이 30%(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수출 증가액의 1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소득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나아가 말레이시아는 2003년부터 수출을 더욱 더 조장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내국인 지분이 60%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증가액의 30%에 상응하는 금액을 법정소득액에서 공제하고, 신규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50%까지, 그리고 최고의 수출증가를 성취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증가액 모두에 대해 소득을 공제하고 있다.

10) 재투자공제액은 재투자가 처음 이루어진 해부터 15년간 계속 받을 수 있다. 대상기업은 해당 프로젝트 완료시, 즉 건물이 준공되었을 때 또는 공장/기계가 가동될 때 재투자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재투자를 위해 취득한 자산은 재투자 후 2년 내에는 처분할 수 없다.

11) 사바주(Sabah)/사라왁주(Sarawak)와 말레이시아 반도의 '동쪽화랑'에 위치한 재투자 대상기업은 이 공제액을 이용하는 경우 과세연도 법정소득액 100%까지 소득세와 상계될 수 있다.

2)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Incentives for High Technology Companies)

하이테크 기업은¹²⁾ 법정소득액에 대한 세금을 5년간 100% 면제하는 개척자자격(PS)이나, 또는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자본지출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액공제(IT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전략프로젝트 우대제도(Incentives for Strategic Projects)

전략프로젝트는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광범위한 산업연관 효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말레이시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본/기술집약적인 제품과 활동을 말한다. 전략프로젝트에 해당되는 활동은 법정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년간 완전히 면제되는 개척자자격(PS)이나, 또는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자본지출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액공제(IT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소규모기업 투자우대제도(Incentives for Small-and Medium-Scale Companies)

말레이시아 회사법(1965)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고, 자본금이 50만 링기트 이하이며, 말레이시아 내국인의 지분이 최소한 70%이상인 소규모 제조업체가 1986년 투자진흥법에 따라 소규모 제조업체를 위한 권장제품을 제조하거나 권장 생산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개척자자격(PS)을 얻을 수 있었다.¹³⁾

12) 하이테크 기업이란 권장활동에 종사하거나 신기술분야에서 권장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말레이시아 국내에서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총 매출액의 1%이상이고 (이 요건은 회사의 운영일/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충족되어야함), 회사의 총 직원 중 최소 5년의 경력을 가진 과학 및 기술 전공자의 비율이 7%이상이어야 한다.

13) 소규모기업은 다음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1. 생산품이 제조업에서 원자재 또는 부품으로 사용되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2003년 개정법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자본금이 250만 링기트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가능 법정소득액 최고 10만 링기트에 대해 20%의 법인세가 공제되고, 잔여 법정소득액에 대해서는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배당금의 20%에 대해서는 세금공제가 주어진다. 또한 2004년부터는 20%의 할인법인세의 적용을 받는 소득의 10만 링기트에서 50만 링기트로 인상되었다.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이 50만 링기트 이하이고 말레이시아 내국인 자본지분이 60%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법정소득에 대해 100% 소득세공제가 주어지거나, 5년 동안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지출에 대해 60% 투자세공제가 주어진다. 이러한 공제는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상계될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효과가 15%이상이거나 프로젝트가 통촌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여야한다.

위 외에도 대기업의 산업연계프로그램(Industrial Linkage Programme, ILP)과 특정 기계와 설비를 제조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등이 있다.

4. 산업재산권 보호

말레이시아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회원국으로서,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1989)과 문학 및 예술작품 활동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 Convention, 1990),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UR협정(TRIPs협정)과 세계지적재산권보호단체(1994)의 서명국이다.

-
2. 생산품이 수입품을 대체하며 말레이시아 국내 원료의 함유량이 금액가치 50%이상이어야 한다;
 3.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 또는
 4. 농업인구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

특허권은 1983년 특허법과 1996년 특허규정에 의해 규율되는데, TRIPs에 따라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상표권은 1976년 등록상표법과 1997년 등록상표규칙의 규율을 받는데, 10년간 보호되고, 매 10년마다 갱신될 수 있다. 저작권은 1987년 저작권법에 따라 50년간 보호를 받는다. 의장권은 1996년 산업의장법과 1999년 산업의장규칙의 규율을 받는데 1차적으로 5년간 보호를 받으며, 2년에 걸쳐 갱신되어 총 15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1975년 산업조정법에 따라 인가된 제조프로젝트가 외국파트너와 기술이전계약을 포함하는 경우에 국제통상산업부(MITI) 장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 제약이나 조건을 방지하고, 또한 로얄티 지급조건이 이전기술 수준에 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기술이전계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이전계약에 규정되도록 하고 있다;

- 기술적 내용과 기술 또는 프로세스의 주요 특징
- 예상되는 생산량
- 제품의 품질과 사양
- 기술지원과 서비스, 그리고 지원과 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상세한 사항.

그러나 다음의 기술이전계약은 자동적으로 승인된다:

- 외국인단독기업(100% 외국인 소유기업)과 외국의 당사자 또는 외국의 지주회사간에 체결되는 기술이전계약;
- 말레이시아 내국인 소유회사 또는 말레이시아의 합작투자회사와 외국당사자간의 모든 기술지원, 특허실시와 노하우계약으로서, 경상실시료가 순매출액의 3%이하인 경우, 고정금액의 일시불 지급의 경우 50만 링기트 이하인 경우, 또는 일시불 지급 금액과 경상실시료의 혼합방식인 경우 합산한 총액이 순매출액의 3% 이하인 경우; 그리고

- 말레이시아 내국인 소유회사 또는 말레이시아의 합작투자회사와 외국당사자간의 모든 기술지원, 특허실시와 노하우계약의 실시료 지불액이 순매출액의 1%이하인 등록상표권과 특허권 사용 계약.

5. 외환관리와 외화교환제도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송금하는 경우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면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합작계약의 자산을 매각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 원금에 상당하는 액수는 외화교환이 금지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 계좌(External Account)를 개설하게 되는데,¹⁴⁾ 외국인 계좌 사이의 자금이동은 금액에 상관없이 링깃 계약 자산 구입 목적 등으로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계좌에서 말레이시아 국내은행의 거주자 계좌로의 자금이동은 링깃 계약 자산구입 목적 등으로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은행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금이 1년 미만인 경우 이를 국외로 송금할 때 송금액의 10% 상당에 부과되어 온 송금과징금(Exit Levy)은 2001년 5월2일에 전면 철폐되었다.

14) 외국인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자금의 원천은 아래로 한정된다:

1. 링깃 계약 상품, 말레이시아에서 등록된 링깃 계약 증권, 말레이시아 국내 자산 매각에 의한 것.
2. 급여, 임금, 수수료, 이자 및 배당금.
3. 외화 매각에 의한 것.
4. 외국인 계좌 내에서의 자금 용도는 아래로 한정된다.
5. 말레이시아 내의 링깃 계약으로 자산 구입
6.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경비 지불
7.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물품 구입, 서비스 대가 지불

6. 조세제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세금은 법인세, 물품세, 판매세, 서비스세, 인지세가 중요하다. 모든 회사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28%의 법인소득세가 부과된다.¹⁵⁾

판매세는 제품, 상품의 구입, 수입품의 인수에 있어 품목에 따라 5~15%의 매상세가 과세된다. 물품세(Excise Tax)는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제조된 특정 물품에 대해 과세되는데 이러한 특정의 물품에는 맥주, 와인, 브랜드 및 위스키 등의 알코올 음료, 담배, 자동차 및 자동 이륜차 등이 있다. 물품세 세율은 물품에 따라 다르고, 1976 물품세법으로 세율이 명시되었다. 물품세의 과세대상 물품이라도 해당 물품이 수출된 경우에는 물품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서비스세는 레스토랑, 호텔, 골프 그린피 등 서비스료에 대해서 5% 과세된다. 인지세는 자산 양도시, 시장성이 있는 증권의 양도, 회사 정관 작성, 계약서, 주권 작성에 즈음하여 과세된다.

7. 투자장벽

말레이시아는 외국인투자의 성공적인 유치를 통해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한 전형적인 국가로서 투자장벽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자국내 투자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비중 80% 이상 기업만 외국인 지분 100% 허용하는 등 수출비중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두었으나 98년 7월 31일부로 해제하였다.

15) 말레이시아에서 법인세 대상으로 보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소득
2. 배당, 이자, 할인료
3. 자산에서 발생한 임대료, 사용료 등
4. 기타, 소득의 성질을 가진 이득 또는 이익
5. 말레이시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6. 말레이시아에서 노동, 서비스 제공으로 얻는 소득

그러나 투자업종에 따라서는 약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이 RM55,000 이하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산업으로 정의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조업 허가나 투자에 따른 세제상의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의 노동력 부족으로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¹⁶⁾

또 하나의 투자장벽은 수출비중에 따라 외국인지분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투자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지분제한을 무기한 폐지하였으나 현지생산능력이 충분한 Paper Packaging, Plastic Packaging, Plastic Injection Moulding Components, Metal Stamping / Metal Fabrication / Electroplating, Wire Harness, Printing, Steel Service Center의 7개 분야는 수출비중에 따라 외국인 지분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수출비중이 80%이상인 기업은 외국인지분한도가 100%까지 가능하나 수출비중이 51-79%인 기업은 51-79%까지 허용되고, 수출비중이 20-50%인 기업은 30-51%까지, 그리고 수출비중이 20% 미만인 기업은 최고 30%까지만 외국인지분이 가능하다.

IV. 맺음말

말레이시아가 외환거래와 과실의 송금을 자유화하고, 각종 행정규제를 철폐하며, 외국인 투자절차를 간소화시키고, 투자관련 정치적 요소들을 분명히 함으로써 투자자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등

16) 그러나 주가가치효과가 30%이상; 경영, 기술 그리고 감독(MTS)지수가 15% 이상; 프로젝트가 권장활동목록에 기재된 활동이나 물품과 관련된 경우; 또는 말레이시아 '동부화랑'이나 사바주 또는 사라왁주에 위치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유지한 것은 말레이시아 투자정책의 성공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지분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직도 말레이시아가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사회 인프라 시설, 사업여건, 생활여건 등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 투자대상지로서의 매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투자법은 다음과 같은 투자장애 요인을 안고 있다.

첫째,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여야 한다.

둘째, 수출비중에 따른 외국인 지분한도를 철폐하여야 한다.

<Abstract>

A Study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Law in Malaysia

Park, Won-Seog

Malaysia has successfully attracted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enacting the Industrial Co-ordination Act of 1975 and Promotion of Investment Act of 1986.

Malaysia has adopted many incentives for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Main tax incentives for manufacturing companies include pioneer status, and investment tax allowance. In addition, there are many incentives for high technology companies, incentives for strategic projects, incentives for small and medium scale companies, incentives to strengthen industrial linkage, incentives for the machinery and equipment industry etc.

However, Malaysia shows following obstacles to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First, it should abolish the limitation on the eligible industries/sectors of investment.

Second, it should remove the policy of foreign equity participation which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level of exports.